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7 선고 2024가단5055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준동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7.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682,937원 및 그중 17,476,447원에 대하여는 2023. 8. 28.부터, 10,027,999원에 대하여는 2023. 9. 19.부터 각 2024. 2. 23.까지는 연 7%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22. 9. 26.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22. 10. 28. 접수 제1679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0. 2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22.

10. 28. 접수 제567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구자광

별지